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7. 8. 28(월) 10:00부터

배포

2017. 8. 25(금)

책임자

동향분석실
전용식 실장(3775-9035)

작성자

전용식 연구위원(3775-9035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4매

보험연구원-주승용 국회의원실, 「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」 정책토론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과 주승용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『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』 정책토론회가 8월 28일(월)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됨
- 이번 토론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여 선량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보험의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
 -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책임 부담 강화(사고부담금 제도 확대 강화)와 보험금 지급 제한(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) 방안 등이 논의됨
 -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억제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치료 유도 방안(치료비지급보증제도 개정)과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됨
-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“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,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”고 지적하였으며 “자동차보험 제도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음

〈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〉

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

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

- **현행 사고부담금 제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)**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 원, 대물사고 1건 당 100만 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**음주·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함**
 -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음주·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고 2015년 증액되었음
 - 그러나 제도 시행 후 2005년부터 2015년간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7,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 23,414건에 비해 17.0% 증가함
 - 오히려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및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**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함**
-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이하 자배법) 제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**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음**
 -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0%가 아닌 1%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배상해야 함
 - 게다가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**운전자의 다 음 연도 보험료 할증 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함**
- **사고부담금 제도 강화와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 개정은 음주운전 억제의 필요조건이고 불법행위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**
 - 음주,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(예: 20% 한도)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(자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 개정)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
 - 음주, 무면허 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

-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%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(자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개정)이 도입될 필요

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

□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 치료비지급보증제도가 도입

-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분쟁을 조정하고 자동차사고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목적임
 - 자배법 제12조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
□ 그러나 지급보증제도의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할 수 있고 과잉 치료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작용

-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**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정보비대칭성**이 발생함
- 이러한 **정보비대칭성**으로 보험회사는 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금액 추산이 어려워 **기한 없고 금액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**을 할 수 밖에 없음
 - 대인배상1뿐 아니라 대인배상2,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차상해 등의 담보에도 지급보증이 적용되는데, 대인배상2의 경우 배상금액 한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금액 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음
- 기한 없고, 금액 한정 없는 치료비 지급보증은 **과잉치료를 유인하는 요인**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예를 들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시점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, 보험회사는 **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**할 수밖에 없음
 - 이러한 경우, 장기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상대 운전자의 차년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데 과도한 치료비로 보험료 할증 폭이 클 수 있음

-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유인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(자배법 12조 개정)하여 **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**
 - 의료기관 등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,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(상해정도 등)을 보험회사에 알리게 함으로써 **피해자는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음**
 - 의료기관 등이 보험회사에 알린 정보에 근거한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, **의사 소견서를 참조하여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증액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취지를 유지**
- 과잉치료와 보험금 과다청구 방지를 위해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 제정과 적용, 그리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(자배법 15조 개정)할 필요가 있음**
-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 피해자보호,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기대됨

<표> 제도개선 방안과 기대효과

제도	현행	개선방안	기대효과
사고부담금 확대 강화	음주,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1건당 300만 원(대인), 100만 원(대물) 구상	-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운전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% 사고부담금 징구,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 - 사고예방을 위해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, 무면허 운전 이외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	- 사회적 제재 강화 - 사고책임 부담을 통한 사고예방
치료비전액 지급	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라도 무과실이 아닐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	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운전 가해자 본인 치료비 일부(최대 50%)를 본인 부담	형평성 제고
치료비지급 보증제도	-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환자 내원 여부를 통보, 보험회사는 지급보증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보 - 통보 시점,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	-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 - 환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 완화, 합리적인 지급보증 유도 - 계속치료 필요 시 재 지급보증	- 과잉치료 억제로 보험금 누수 억제 - 합리적인 피해자 보호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<http://www.kiriorkr>